

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1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의 시상부문을 9개 부문에서
전체 시민의 귀감이 되는 우수한 시민중에서 시상부문 없이 3명
이내로 수상대상을 축소함으로써 상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9개 시상부문을 부문 없이 3명 이내로 축소(안 제3조)
- 나. 시상부문별 삭제에 따른 수상후보자 추천 관련조항 수정(안 제5조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
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수상대상자)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구미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구미시가 고향인 출향인사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전체 시민의 귀감이 되는 우수한 시민 중 3명 이내로 수여한다. 다만, 사망자의 공적이 이에 해당할 때에도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미대상은 본인의 명의로 유족대표에게 한다.

제5조 중 “제3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각 부문별 관련기관·단체장”을 “관내 기관·단체장”으로 한다.

제7조 단서 중 “해당 분야를 시상”을 “시상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수상대상 및 시상부문)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시민으로서 3년이상 거주한 자 또는 구미시가 본적인 출향인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공적이 뚜렷한 자로 한다. 다만, 사망자의 공적이 이에 해당할 때에도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미대상은 본인의 명의로 유족대표에게 시상한다. 1. <u>지역사회 발전 부문</u> 2. <u>봉사 부문</u> 3. <u>효행 부문</u> 4. <u>문화예술 부문</u> 5. <u>학술및교육 부문</u> 6. <u>체육 부문</u> 7. <u>산업평화부문</u> 8. <u>농업부문</u> 9. <u>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이 있는 자</u>	제3조(수상대상자)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구미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구미시가 고향인 출향인사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전체 시민의 귀감이 되는 우수한 시민 중 3명 이내로 수여한다. 다만, 사망자의 공적이 이에 해당할 때에도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미대상은 본인의 명의로 유족대표에게 한다. 1.~ 9. <삭 제>
제5조(수상후보자 추천)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당해 읍·면·동장이 하되, 제3조 제1호 내지	제5조(수상후보자 추천) ----- ----- ----- 관내 기관·단체장

<u>제8호 의 각 부문별 관련기관 .</u> <u>단체장</u>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 을 의뢰할 수 있다. 제7조(시상) 구미대상의 시상은 년 1회 시행한다. 다만, 추천 및 심사결과 시상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<u>해당 분야를 시상</u>하지 아니할 수 있다.	----- -----. 제7조(시상) ----- -----. ----- ----- <u>시상</u>----- -----.
--	--